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150-1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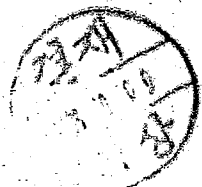
시행일자: 1995. 10. 10.

(경유) (제1안)

0939

수신: 내부 결재

참조



취급		사 장
보존		1
부 시	장	
기획관리실장	장	
법무 담당관	장	
기안	법제개정장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등 2건 공포

1. 제2회 서울특별시조례규칙심의회('95. 9. 14) 의결을 거쳐 내부부장관에게 사전보고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등 2건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

규칙제 2711
~ 2712 호

- 첨부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부.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관(공보1담당관)

제목: 규칙공포 통보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등 2건을 시보에 게재 공포하기 바랍.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²⁷¹¹ ~ ²⁷¹² 호,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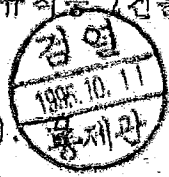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규칙공포 통보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등 2건을 시보에 게재 공포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²⁷¹¹ ~ ²⁷¹² 호 1부(생략).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지정개발담당관, 농수산유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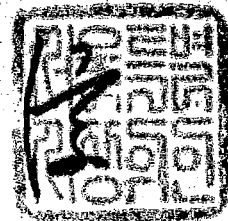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홍준



199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1,898"를 "1,983"으로 하고, 정무직란 다음에 2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급란 정원 "5"를 "6"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지방부이사관 1"을 신설한다.

2 급	4	지방이사관 4
-----	---	---------

동표중 5급란 정원 "249"을 "263"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69(교육정원 10)"을 "181(교육정원 10)"로, "보건직 1" 다음에 "의무직 2"를 신설하며, 6급란 정원 "498"를 "509"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335"을 "345"로, "환경직 2" 다음에 "교통직 1"을 신설하고, 7급란 정원 "577"을 "59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391"를 "402"로, "환경직 3" 다음에 "교통직 2"를 신설하며, 8급란 정원 "3"을 "23"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를 "18"로, 전산직 "1"을 "2"로, "전산직 2(중전의 1)" 다음에 "교통직 3"을 신설하고, 8급란 다음에 9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급	19	행정직 18, 교통직 1
-----	----	---------------

동표중 별정직란 "72"를 "74"로 하고, 정원내용중 6급상당 "27"을 "28"로, 비서 "4"를 "5"로, 8급상당 "3"을 "2"로, 비서 "2"를 "1"로, 8급상당 다음에 "9급상당 2 : 속기사 2"를 신설하며.

기능직란 정원 "440"을 "441"로, 정원내용중 10등급 "282"를 "283"으로, 사무보조원 "103(타자 69, 필기 27, 계리 1)"을 "104(타자 70, 필기 27, 계리 1)로 한다.

<별표2-1> 지방공무원교육원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129"를 "134"로 하고, 6급란 정원 "16"을 "1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6" 다음에 "교육행정직 1"을 신설하고, 7급란 정원 "18"을 "20"으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14" 다음에 "교육행정직 2"를 신설하며, 8급란 정원 "11"를 "13"으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8" 다음에 "교육행정직 2"를 신설한다.

<별표3-1> 상수도사업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가.사업본부의 계란 정원 "192"를 "197"로 하고, 5급란 정원 "15"을 "17"로, 정원내용중 "기계 또는 전기직 2" 다음에 "환경직 2"를 신설하며, 8급란 정원 "23"을 "26"으로, 정원내용중 "화공직 1" 다음에 "환경직 1"을 신설하고, 수도토목직 "2"를 "4"로 한다.

<별표3-2> 전자계산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145"를 "159"로 하고, 7급란 정원 "39"를 "42"로, 정원내용중 전산직 "25"를 "28"로, 8급란 정원 "29"를 "36"으로, 정원내용중 전산직 "18"를 "25"로, 9급란 정원 "18"를 "22"로, 정원내용중 전산직 "9"를 "13"으로 한다.

<별표3-4> 시립병원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700"을 "769"로 하고, 5급란 정원 "12"를 "64"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4" 다음에 "의무직 52"를 신설하며, 6급란 정원 "62"를 "79"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8" 다음에 "의무직 17"을 신설한다.

<별표3-5> 청소사업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가.사업본부의 계란 정원 "170"를 "171"로 하고, 8급란 다음에 9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급	1	전산직 1
-----	---	-------

<별표3-7> 부녀보호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24"를 "25"로 하고, 6급란 정원 "1"을 "2"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1" 다음에 "의무직 1"을 신설한다.

<별표3-11> 청소년직업전문학교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59"을 "63"로 하고, 8급란 다음에 9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급	4	교육행정직 4
-----	---	---------

<별표3-12> 세종문화회관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198"을 "205"로 하고, 9급란 정원 "3"를 "10"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3" 다음에 "교육행정직 7"를 신설한다.

<별표3-14>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276"를 "283"로 하고, 5급란 정원 "9"를 "11"로, 정원내용중 "축산 또는 수의직 1" 다음에 "임업 또는 축산직 2"를 신설하며, 6급란 정원 "21"를 "23"로, 정원내용중 "축산직 1" 다음에 "임업 또는 축산직 2"를 신설하고, 8급란 정원 "17"를 "19"로, 정원내용중 "축산직 3" 다음에 "임업 또는 축산직 2"를 신설하고, 9급란 정원 "7"를 "8"로, 정원내용중 "임업직 2" 다음에 "임업 또는 축산직 1"를 신설한다.

<별표3-20> 교통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13"을 "23"로 하고, 6급란 정원 "4"를 "6"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4" 다음에 "교통직 2"를 신설하며, 7급란 정원 "3"를 "8"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3" 다음에 "교통직 5"를 신설하고, 7급란 다음에 8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급	3	교통직 3
-----	---	-------

<별표3-21> 교통방송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67"를 "152"로 하고, 5급란 정원 "2"를 "38"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1"를 "행정직 28, 통신직 9"로 하고, 6급란 정원 "5"를 "51"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3"를 "행정직 29, 통신직 20"으로 하며, 7급란 정원 "9"를 "10"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4" 다음에 "통신직 1"를 신설하고, 9급란 정원 "5"를 "7"로, 정원내용중 행정직 "3"를 "5"로 한다.

<별표3-26> 항공대지방공무원정원표의 계란 정원 "13"을 "22"로 하고, 계란 정원 다음에 5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급	9	항공직 9
-----	---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1>의 본청 지방공무원 증원 정원중 5명은 정년을 기한으로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행정2급 3명·행정3급 1명은 1996년 6월 30일까지, 행정2급 1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정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1-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u>1,898</u>		계	<u>1,983</u>	
정무직	(생략)		정무직	(현행과 같음)	
< 신 설 >			2급	4	지방부이사관 4
2·3급	(생략)		2·3급	(현행과 같음)	
3급	<u>5</u>	(생략) < 신 설 >	3급	<u>6</u>	(현행과 같음) 지방부이사관 1
4급	(생략)		3급	(현행과 같음)	
5급	<u>249</u>	행정직 169(교육정원 10), 보건직 1, < 신 설 > (생략)	5급	<u>263</u>	행정직 181(교육정원 10),, 의무직 2 (현행과 같음)
6급	<u>498</u>	행정직 335, 환경직 2, < 신 설 > (생략)	6급	<u>509</u>	행정직 345,, 교통직 1 (현행과 같음)
7급	<u>577</u>	행정직 391, 환경직 3, < 신 설 > (생략)	7급	<u>590</u>	행정직 402,, 교통직 2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8급	3	행정직 2, 전산직 1, < 신 설 >	8급	23	행정직 18, 전산직 2, 교통직 3
< 신 설 >	신 설		9급	19	행정직 18, 교통직 1
연구직	(생 략)		연구직	(현 행 과 같 음)	
별정직	72	4급상당 (생 략) 5급상당 6급상당 27 : 비서 4 (생 략) 7급상당 (생 략) 8급상당 3 : (생 략) 비서 2 < 신 설 >	별정직	74	4급상당 (현행과같음) 5급상당 6급상당 28 : 비서 5 (현행과 같음) 7급상당 (현행과 같음) 8급상당 2 : (현행과같음) 비서 1 9급상당 2 : 속기사 2
기능직	440	7등급 (생 략) 9등급 10등급 282 : (생 략) 사무보조원 103(타자 69, 필기 27, 계리 1)	기능직	441	7등급 (현 행 과 같 음) 9등급 10등급 283 : (현행과 같음) 사무보조원 104(타자 70, 필기 27, 계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1> 지방공무원교육원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2-1> 지방공무원교육원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u>129</u>		계	<u>134</u>	
1급 ~ 5급	(생 략)		1급 ~ 5급	(현 행 과 같 음)	
6급	<u>16</u>	행정직 16, <신 설>	6급	<u>17</u>	행정직 16, <u>교육행정직 1</u>
7급	<u>18</u>	행정직 14, <신 설>	7급	<u>20</u>	행정직 14, <u>교육행정직 2</u>
8급	<u>11</u>	행정직 8, <신 설>	8급	<u>13</u>	행정직 8, <u>교육행정직 2</u>
9급 ~ 기능직	(생 략)		9급 ~ 기능직	(현 행 과 같 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3-1> 상수도사업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사업본부			<별표3-1> 상수도사업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사업본부		
직급	정원	정원내용	직급	정원	정원내용
계	192		계	197	
1급 ~ 4급	()	생략	1급 ~ 4급	()	현행과 같음
5급	15	(생략), <신설>	5급	17	(현행과 같음), 환경직 2
6급 ~ 7급	()	생략	6급 ~ 7급	()	현행과 같음
8급	23	(생략), <신설>, 수도토목직 2	8급	26	(현행과 같음) 환경직 1, 수도토목직 4
별정직 ~ 기능직	()	생략	별정직 ~ 기능직	()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2> 전자계산소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3-2> 전자계산소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u>145</u>		계	<u>159</u>	
3급 ~ 6급	(생 략)		3급 ~ 6급	(현 행 과 같 음)	
7급	<u>39</u> (생 략), 전산직 <u>25</u>		7급	<u>42</u> (현 행 과 같 음), 전산직 <u>28</u>	
8급	<u>29</u> (생 략), 전산직 <u>18</u>		8급	<u>36</u> (현 행 과 같 음), 전산직 <u>25</u>	
9급	<u>18</u> (생 략), 전산직 <u>9</u>		9급	<u>22</u> (현 행 과 같 음), 전산직 <u>13</u>	
별정직 ~ 기능직	(생 략)		별정직 ~ 기능직	(현 행 과 같 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4> 시립병원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3-4> 시립병원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u>700</u>		계	<u>769</u>	
3급	(생 략)		3급	(현 행 과 같 음)	
5급	<u>12</u> (생 략), < 신 설 >		5급	<u>64</u> (현 행 과 같 음), <u>의무직 52</u>	
6급	<u>62</u> (생 략), < 신 설 >		6급	<u>79</u> (현 행 과 같 음), <u>의무직 17</u>	
7급 기능직	(생 략)		7급 기능직	(현 행 과 같 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3-5> 청소사업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사업본부			<별표3-5> 청소사업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사업본부		
직급	정원	정원내용	직급	정원	정원내용
계	170		계	171	
1급 ~ 8급	(생략)	1급 ~ 8급	(현행과 같음)
<	신	설	9급	1	전산직 1
기능직	(생략)	기능직	(현행과 같음)

시.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7> 부녀보호소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3-7> 부녀보호소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u>24</u>		계	<u>25</u>	
6급	<u>1</u>	(생 략), < 신 설 >	6급	<u>2</u>	(현행과같음), 의무직 1
7급 ~ 기능직	(생 략)		7급 ~ 기능직	(현 행 과 같 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3-11> 청소년직업전문학교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3-11> 청소년직업전문학교지방공무원 정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직</th> <th style="width: 15%;">급</th> <th style="width: 15%;">정</th> <th style="width: 15%;">원</th> <th style="width: 40%;">정 원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9</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8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body> </table>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59			4급	~	(8급	생 략)	<	신		>	설	별정직	~	(기능직	생 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직</th> <th style="width: 15%;">급</th> <th style="width: 15%;">정</th> <th style="width: 15%;">원</th> <th style="width: 40%;">정 원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63</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8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 행 과 같 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급</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교육행정직 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 행 과 같 음)</td> </tr> </tbody> </table>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63			4급	~	(8급	현 행 과 같 음)	9급		4		교육행정직 4	별정직	~	(기능직	현 행 과 같 음)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59																																																	
4급	~	(8급	생 략)																																															
<	신		>	설																																															
별정직	~	(기능직	생 략)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63																																																	
4급	~	(8급	현 행 과 같 음)																																															
9급		4		교육행정직 4																																															
별정직	~	(기능직	현 행 과 같 음)																																															

시정

03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12> 세종문화회관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3-12> 세종문화회관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u>198</u>		계	<u>205</u>	
2·3급 ~ 8급	(생 략)	2·3급 ~ 8급	(현 행 과 같 음)
9급	<u>3</u>	(생 략), < 신 설 >	9급	<u>10</u>	(현행과같음), <u>교육행정</u> <u>직 7</u>
별정직 ~ 기능직	(생 략)	별정직 ~ 기능직	(현 행 과 같 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14>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징원표			<별표3-14>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u>276</u>		계	<u>283</u>	
3급 ~ 4급	()	(생 략)	3급 ~ 4급	()	(현 행 과 같 음)
5급	<u>9</u>	(생 략), < 신 설 >	5급	<u>11</u>	(현 행 과 같 음), <u>임업 또는 축산직 2</u>
6급	<u>21</u>	(생 략), < 신 설 >	6급	<u>23</u>	(현 행 과 같 음), <u>임업 또는 축산직 2</u>
7급	()	(생 략)	7급	()	(현 행 과 같 음)
8급	<u>17</u>	(생 략), < 신 설 >	8급	<u>19</u>	(현 행 과 같 음), <u>임업 또는 축산직 2</u>
9급	<u>7</u>	(생 략), < 신 설 >	9급	<u>8</u>	(현 행 과 같 음), <u>임업 또는 축산직 1</u>
연구직 ~ 기능직	()	(생 략)	연구직 ~ 기능직	()	(현 행 과 같 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20>교통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3-20>교통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u>13</u>		계	<u>23</u>	
3급	()	생 략)	3급	()	현 행 과 같 음)
5급	()	생 략)	5급	()	현 행 과 같 음)
6급	<u>4</u>	(생 략), < 신 설 >	6급	<u>6</u>	(현 행 과 같 음), < 교통직 2 >
7급	<u>3</u>	(생 략), < 신 설 >	7급	<u>8</u>	(현 행 과 같 음), < 교통직 5 >
< 신 설 >			8급	<u>3</u>	< 교통직 3 >
기능직	()	생 략)	기능직	()	현 행 과 같 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21> 교통방송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3-21> 교통방송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계	<u>67</u>		계	<u>152</u>	
2·3급 ~ 4급	(생 략)	2·3급 ~ 4급	(현 행 과 같 음)
5급	<u>2</u>	행정직 <u>1</u> , <신 설> (생 략)	5급	<u>36</u>	행정직 <u>28</u> , 통신직 <u>9</u> , (현 행 과 같 음)
6급	<u>5</u>	행정직 <u>3</u> , <신 설> (생 략)	6급	<u>51</u>	행정직 <u>29</u> , 통신직 <u>20</u> , (현 행 과 같 음)
7급	<u>9</u>	(생 략), <신 설>	7급	<u>10</u>	(현 행 과 같 음), 통신직 <u>1</u>
8급	(생 략)	8급	(현 행 과 같 음)
9급	<u>5</u>	행정직 <u>3</u> , (생 략)	9급	<u>7</u>	행정직 <u>5</u> , (현 행 과 같 음)
기능직	(생 략)	기능직	(현 행 과 같 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3-26> 항공대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3-26> 항공대지방공무원정원표		
직급	정원	정원내용	직급	정원	정원내용
계	<u>13</u>		계	<u>22</u>	
<	신	신설	>	5급	9 항공직 9
소방직 ~ 기능직	(생략)	소방직 ~ 기능직	(현행과 같음)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구 구청장 직선에 따른 잉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책개발과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보좌관제를 시행하고, 예산으로 채용계약후 별도 관리하던 전문직 공무원을 정원으로 운영하여 인력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5명을 한시정원으로 둠.

(안 별표1-1)

- 행정직 2급 4명, 행정직 3급 1명

나. 전문직 공무원 293명을 정원으로 책정함.

(안 별표1-1 내지 별표3-26)

- 일반직 5급114·6급79·7급23·8급37·9급40

다. 시정홍보·보도요원 4명을 증원함(안 별표1-1)

- 행정 5급1, 행정 6급1, 행정 7급1, 기능직 타자1

라. 시장비서실 비서 직급 상향조정(안 별표1-1)

- 별정직 8급상당1 → 별정직 6급상당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